

## 안산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889
----------	-----

제출연월일 : 2000. 6.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정사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립중인 안산시자원회수시설이 2001년 4월 우리시에 인계됨에 따라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안산시자원회수시설의 구체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주요골자

가. 가연성폐기물중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범위를 지정함

(안 제3조1항)

나. 안산시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1항·2항)

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1항)

라.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할 경우 유상으로 공급하도록 함

(제10조1항)

###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 25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00. 5.22. ~ 2000. 6.10.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안산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안산시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자원회수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②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제1항의 자원회수시설안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 ③ “폐기물운반차량”이라 함은 자원회수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 ④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운반차량에 운전자 1인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회이상 중량을 계량하여 산출평균한 값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의 처리)** ①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중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탁계약한 수집·운반업자 또는 시장이 직접 수거한 폐기물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자원회수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2. 자원회수시설의 보수·점검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4조 (자원회수시설의 운영등)** ①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은 직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3. 당해 자원회수시설을 시공한 자

- 4.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
  - 5.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안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 ② 자원회수시설의 위탁 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반입허가)** ①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의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반입을 허가하고 출입증 및 공차증량에 의한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운반차량의 정면 우측하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미부착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안산시 전지역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시장이 임시로 직접 수거할 경우의 그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업체) 또는 그 소속 폐기물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보유한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4.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5. 가연성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한 경우
6. 시장의 허가없이 타 시·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한 경우
7.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에게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시설·장부·서류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자원회수시설이용자 또는 폐기물운반차량이 자원회수시설 및 그 부대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감시요원)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당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청사관리인부임에 준하는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소각열의 이용) ①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열을 이용하여 중기 및 온수를 생산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각열을 유상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 공급조건 · 판매요금 및 시설물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권한중 일부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 운영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산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889
----------	-----

발의년월일 : 2000. 7. 1.  
발 의 자 : 도시·건설위원장

## 1. 수정 이유

- 조례 형식상의 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조례 형식상의 내용에 맞게 수정함.

## 2. 수정주요골자

- 안 제2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동조 제1호 내지 제4호로 함.

## 안산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안산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동조 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원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①(생략)	1. (원안과 같음)
②(생략)	2. (원안과 같음)
③(생략)	3. (원안과 같음)
④(생략)	4. (원안과 같음)
제3조(폐기물의 처리) (생략)	제3조(폐기물의 처리) (원안과 같음)